

충청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20-29호

- 2020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및 제3회 경력경쟁 -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2020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과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2020. 6. 13.(토), 10:00 ~

시험명	계급	직렬(직류)		과목수	시험시간		비고
					부터	까지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급	간호(간호), 보건진료(보건진료)		5과목	10:00	11:40	100분
	9급	행정(일반행정), 세무(지방세), 전산(전산), 사회복지(사회복지), 사서(사서), 공업(일반기계, 농업기계, 일반전기, 일반화공), 농업(일반농업, 축산), 녹지(산림자원, 조경), 보건(보건), 식품위생(식품위생), 환경(일반환경), 시설(도시계획, 일반토목, 건축, 지적, 디자인), 방재안전(방재안전), 방송통신(통신기술)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8급	의료기술	의료기술(임상심리)	3과목	10:00	11:00	60분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물리치료 방사선 임상병리 치과위생				

※ 시험당일 07:50부터 입실 가능 /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

2. 시험장소: 17개 시험장

가. 시험장소 : “붙임1” (제1회공개경쟁), “붙임2” (제3회경력경쟁) 참고

- ※ 시험 응시표는 5월 22일(금) 09:00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응시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편의지원 신청자는 제16시험장(청주남중)에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나. 장애 등 편의지원 대상자 및 응시요령 : “붙임3” 참고

3.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모든 시험장(17개소)은 사전·사후에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철저한 소독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 나. 모든 응시자는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후 입실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 시험장 출입구에서 자가 문진표(“붙임4”)를 제출하여야 시험실 입실이 가능합니다. 시험 당일 원활한 입실을 위해 직접 출력, 자필 작성한 자가 문진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시험장 입실 시 응시자 간 안전거리를 최소 1.5m 이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마.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하되, 응시자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관리관(감독관)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바. 기침·발열 등 의심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자가격리자가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청을 거쳐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협의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별도의 시험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신고 및 응시 신청》

1. 질병관리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통지에 따라 격리조치된 경우 지체없이 연락
 2. 응시신청 기간: 2020. 6. 5.(금) ~ 6. 12.(금) 20시까지
 3. 제출서류: **자가격리자 시험 신청서(“붙임4”)**, **격리통지서 사본**
 4. 제출방법: 이메일 송부(taemj128@korea.kr) / (043)220-2533-2537
- ※ 자가격리자 응시 신청 대상자에게 시험장소 및 시험장 출입방법 등 개별 안내

- 아. 위의 응시제한자는 응시수수료를 시험종료 후 30일 이내 확진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 자. 격리대상자 응시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장 출입구에서 응시표 또는 신분증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차. 시험실 환기를 위해 시험실 창문 등을 상시 개방하오니 시험당일 외부 날씨에 맞는 복장준비 등 컨디션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 중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응시자 유의사항: 일반사항 및 답안지 작성요령

[일반사항]

-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시험당일 07:50부터 입실 가능)
- ※ 시험당일 손소독 및 발열검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시험장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다.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응시자 본인에게 지정된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마.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 신분증 인정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학생증, 공무원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표에 기록(메모)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 판결문 등)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정정 할 수 있으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아.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 시험시간 중에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휴대폰, 태블릿 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이어폰,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 차.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카페인·탄산음료 등)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소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시험실 내에서 소변 등 용변해결요구는 타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어 수용 불가합니다.

가.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불펜 똑딱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가 작성, 제출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

다.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자체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녹화기기(안경 등)로 촬영하거나, 시험종료 후 비공개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 문제 및 답안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공개대상 시험문제 :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일부과목,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전체과목(시행계획 공고문 참고)

공고번호: 제2020-13호(공개경쟁), 제2020-14호(경력경쟁)

라. 지진 발생 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방송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작성요령]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득점은 OCR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반드시 <보기>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특히 답안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와 인적사항 및 책형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답안지를 받으면 안내방송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아래내용을 빠짐없이 기재 또는 표기하여야 합니다.

(시행일자) 시험시행 연·월·일을 숫자로 기재합니다.

(응시직급) 해당하는 직급을 기재합니다.
 예) 간호8급, 보건진료8급, 행정9급, 세무9급, 전산9급, 사회복지9급, 사서9급, 공업9급, 농업9급, 녹지9급, 보건9급, 식품위생9급, 환경9급, 시설9급, 방재안전9급, 방송통신9급, 의료기술8급, 의료기술9급

(성 명) 본인의 한글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합니다.

(필적감정용 기재란)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응시번호) 위 칸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아래 칸에 ‘●’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생년월일) 위 칸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아래 칸에 ‘●’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책 형)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을 올바른 표기 ‘●’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및 책형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

- 라.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의 과목명과 문제 누락·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 로 표기해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사.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다음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그 시험의 정지, 무효, 합격취소,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료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 안내방송이나 시험감독관·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특히,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표기)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작성 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총무과 교육고시팀(☎043-220-2533~25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안내 등

- 가. 필기시험 발표일 : 2020. 7. 10.(금)
- 나. 필기시험 발표처 : 충청북도 시험·채용정보 홈페이지에 게시
 ▶ <http://sihum.chungbuk.go.kr>
- 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적성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라.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후 각각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며, 전화 열람신청은 불가합니다.

- 붙임
1. 필기시험 장소(제1회 공개경쟁) 1부.
 2. 필기시험 장소(제3회 경력경쟁) 1부.
 3. 장애 등 편의지원 대상자 및 응시요령 안내 1부.
 4. 문진표(서식) 1부.
 5. 자가격리자 신청서(서식) 1부.
 6. 답안지 견본 1부.
 7. 확대답안지 견본(기입형) 1부.
 8. 확대답안지 견본(표기형) 1부.